

「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03월 10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03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 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
나.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내용으로 한 군수의 책무와 임업인 등의 책무규정(안 제3조)

다. 사업비 지원범위(안 제4조)

라.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경비지원 규정(안 제5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 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

목적으로 하며,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안 제3조에서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
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내용으로 한 군수의 책무와
임업인 등의 책무
안 제4조에서는 사업비 지원범위
안 제5조에서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경비지원을
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사업비의 지원,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을
통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
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, 삼척시, 양구군, 양양군, 화천군이 있으며,
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